

## ▣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동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		접수 장소에 비치 (인터넷 청약 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 인터넷 청약 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
기관추천 (일반) 특별공급	○		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,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(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청약신청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		당사 기본주택에 비치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, 배우자	이혼,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/혼인여부 확인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,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시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 [표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참조]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상정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주민등록증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	○		인장	대리인	

\* 상기 제증명 서류는 "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"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\* 주민등록(표)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.